

2018 소방시설법 기본서 정오표(18.5.13)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10 (1)①, p 119 (1)① p 134 ㉔	피난설비	피난구조설비
p 14 (2)③ 및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p 29 (3)③	소방 관련법인 방염업	삭제
p 29 (3)③의 표	방염업자	삭제
p 172 19번 문제 및 해설	소화기구	소화기
p 204 (1)③	수요의	수요에
p 215 ③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소방 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p 224 09 (1)①	인명피해를	인명피해가
p 225 (2)③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p 228 실전연습 해설	3,000m ²	5,000m ²
p 285 ㉔㉔	소방청장	시설관리업
p 325 (2)⑤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소방관련 제품 또는 기기	삭제
p 363 (4)①	조명령 연기신청	조치명령 연기신청

[시행 2018.3.27.] [제15533호, 2018.3.27., 일부개정]

1. 이유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제2조제1항제1호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피난구조설비